

● 제29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768)

2020. 09. 0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68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20년 8월 12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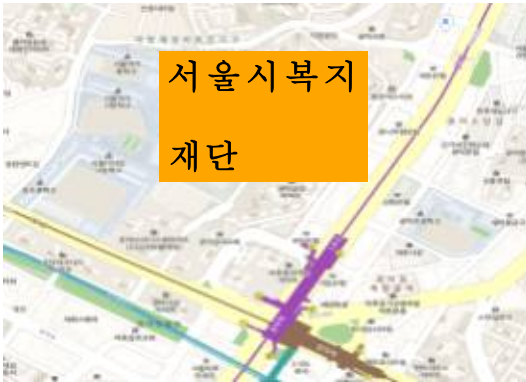
1)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 건물연면적 10,830.25㎡

- 위치도



위치도



건물현황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3) '21년 총 소요예산(안) : 47,007,241천원

4) '21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30,379,053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6,628,188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 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서울시 복지재단 일반현황

가. 서울시 복지재단 현황 및 개요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었음.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20년 현재 복지재단은 1전략관·2실, 2본부·1실, 3센터·1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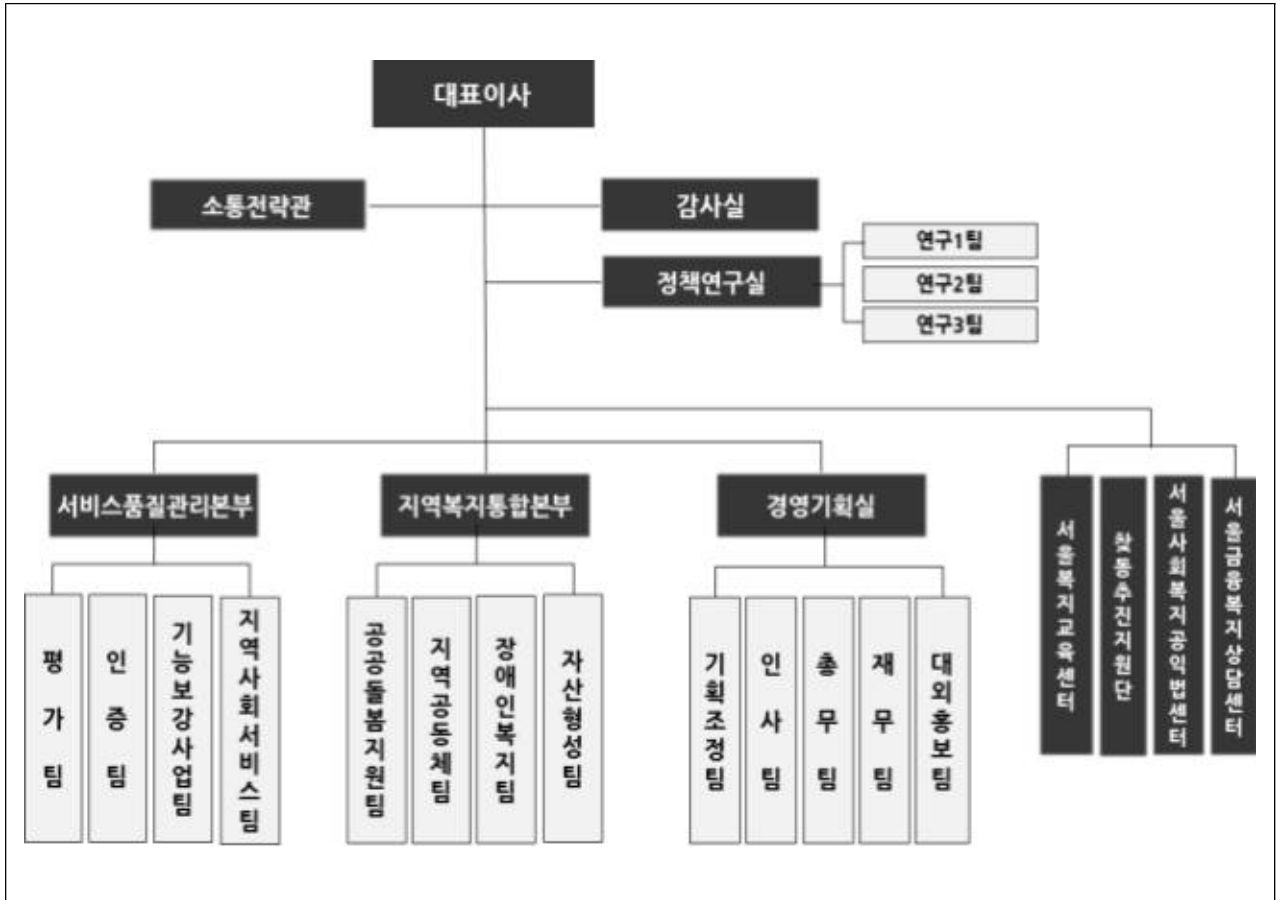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표>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20. 7. 31. 기준)



○ 복지재단의 현재 인력 정원은 177명, 현원 176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정·현원표

(’20.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사무직군·상담직군							미화직군	임피제 별근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177	1	176	1	10	22	26	27	56	32	2	-
현원	176	1	175	-	10	23	25	21	38	54	2	2

다. 예산 관련

- 집행부는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복지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합 계	45,154	38,048	33,750	33,625	35,190
출 연 금	38,635	32,359	26,072	21,483	22,004
사 업 수 입	464	510	423	472	1,484
사 업 외 수 입	2,213	2,197	2,000	4,730	4,171
잉 여 금	3,842	2,982	5,255	6,941	7,532

- 분야별 주요사업비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분야별 사업비 현황(세출예산 중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사업비 구성			기금회계 사업비 구성		
예 산 과 목	사업비	비율(%)	예 산 과 목	사업비	비율(%)
합 계	9,583	100	합 계	16,049	100
선도적복지정책개발	1,344	14	서울꿈나래통장	1,380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1,645	17	희망두배 청년통장	9,844	61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3,590	37	장애인이룸통장	3,924	24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188	2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760	5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498	5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41	2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2,319	24			

- 일반회계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에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돌봄SOS 센터 운영매뉴얼 개선 사업 등),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등),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일반회계 사업비 구성에서 재단의 고유업무인 정책연구 업무에 사업비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복지재단의 정책연구 추진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복지재단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복지재단의 예산 및 사업 편성 시 정책연구 부분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재단의 예산의 많은 부분이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복지재단의 수입을 시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책연구 및 경영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표> 3년간 복지재단 출연금 외 외부기관 위탁(협약)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연도	위탁(부서) /협약기관	위탁사무명	위탁방법	예산	비고
1	2018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위수탁협약	360	일반회계
2	2018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	600	기금회계
3	2018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업무 협약	11	'18. 4월 사업종료 서울시사회 복지관협회 사업이관 (기금회계사업)
4	2018	민간기업 (솔트룩스, 그린카 등)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지정 기탁	150	서울특별시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 후 지정 기탁 (기금회계사업)
5	2019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위수탁협약	356	일반회계
6	2019	장애인자립 지원과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수의계약	19	연구과제 (일반회계)
7	2019	복지정책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 터포준운영모델연구	수의계약	14	연구과제 (일반회계)
8	2019	복지정책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교육콘텐츠개발연구	수의계약	12	연구과제 (일반회계)
9	2019	어르신복지과	2019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수의계약	19	연구과제 (일반회계)
10	201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	630	기금회계
11	2019	민간기업 (솔트룩스, 그린카 등)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지정 기탁	199	서울특별시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 후 지정 기탁 (기금회계)
12	2020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위수탁협약	364	일반회계
13	202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력사업	업무 협약	140	일반회계

연번	연도	위탁(부서) /협약기관	위탁사무명	위탁방법	예산	비고
14	202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	760	기금회계
15	2020	민간기업 (솔트룩스, 그린카 등)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지정 기탁	141	서울특별시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 후 지정 기탁 (기금회계)

3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복지재단의 출연근거²⁾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³⁾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예산안 심의 시 복지재단의 신규 사업추진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기추진사업 가운데에서도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복지재단의 본래 목적과의 적합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